# 변 경 대 비 표

**1. 펀드명 :** 하나UBS IT코리아증권투자신탁(제1호)[주식]

**2. 주요 변경내용**

- 종류형 C-PE, C-P2E 신설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
**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** 2018년 05월 17일

**4. 대비표**

**[집합투자규약]**

| 구 분 | 변 경 전 | 변 경 후 |
|---|---|---|
| **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** | <추가> | 종류 C-PE : C8312<br>종류 C-P2E : C9652 |
| **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** | 제3항<br><추가> | 제3항<br>17. 종류 C-P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br>18 종류 C-P2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|
| **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** | 제1항<br><추가> | 제1항<br>17. 종류 C-PE 수익증권<br>18. 종류 C-P2E 수익증권 |
| **제39조 (보수)** | 제3항<br><추가> | 제3항<br>[종류C-PE 수익증권]<br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7.446<br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5<br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4<br>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 |

| | | |
|---|---|---|
| | | [종류C-P2E 수익증권]<br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7.446<br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<br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4<br>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8 |

**[간이투자설명서]**

| 구 분 | 변 경 전 | 변 경 후 |
|---|---|---|
| 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| **보수**<br>※ 주석사항<br>· 종류 A-U, C2~C5, C-F, C-P, C-P2, W, S, AG 및 CG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| **보수**<br>※ 주석사항<br>· 종류 A-U, C2~C5, C-F, C-P, C-P2, W, S, AG, CG, C-PE 및 C-P2E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|
| 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| **3. 운용전문인력**<br>(생략) | **3. 운용전문인력**<br>(업데이트) |
| 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| 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<br>**2. 위험등급**<br>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5.33%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| 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<br>**2. 위험등급**<br>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7.83%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|

**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**

| 구 분 | 변 경 전 | 변 경 후 |
|---|---|---|
|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| 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<br><종류 C-PE, C-P2E 신설> | 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<br>집합투자기구 명칭(종류형 명칭) / 펀드코드<br>C-PE / C8312<br>C-P2E / C9652 |
| 제2부 집합 | 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| 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|

<table>
<tr><td>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<종류 C-PE, C-P2E 신설></td><td>
<table>
<tr><th>집합투자기구 명칭<br>(종류형 명칭)</th><th>펀드코드</th></tr>
<tr><td>C-PE</td><td>C8312</td></tr>
<tr><td>C-P2E</td><td>C9652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<br>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<br>2018년 05월 17일<br>- 종류형 C-PE, C-P2E 신설<br>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변동성 변경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br>가. 책임운용전문인력<br>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br>가. 책임운용전문인력<br>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br>나. 종류형 구조<br><종류 C-PE, C-P2E 신설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br>나. 종류형 구조
<table>
<tr><th>종류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
<tr><td>종류<br>C-P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
<tr><td>종류<br>C-P2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</td></tr>
</table>
<table>
<tr><th>종류</th><th>판매수수료</th><th>판매보수</th><th>총보수</th></tr>
<tr><td>C-PE</td><td>없음</td><td>연0.3500%</td><td>연1.1526%</td></tr>
<tr><td>C-P2E</td><td>없음</td><td>연0.3000%</td><td>연1.1026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br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br>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</td><td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br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br>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5.33% 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br>- (생략)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.</td><td>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7.83% 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br>- (생략, 현행과 동일) <삭제>.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br>가. 매입<br>(2) 종류별 가입자격<br><종류 C-PE, C-P2E 신설>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br>가. 매입<br>(2) 종류별 가입자격<br><table><tr><th>종류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종류 C-P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<tr><td>종류 C-P2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br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br><종류 C-PE, C-P2E 신설><br><br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br><종류 C-PE, C-P2E 신설>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br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br>종류 C-PE, C-P2E<br>선취판매수수료, 후취판매수수료, 환매수수료 : 없음<br><br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br>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지급비율(연간, %)</th></tr><tr><th>종류 C-PE</th><th>종류 C-P2E</th></tr><tr><td>집합투자업자</td><td>0.7446%</td><td>0.7446%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</td>
<td>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<br><종류 C-PE, C-P2E 신설></td>
<td>
<table>
<tr><td>판매회사</td><td>0.3500%</td><td>0.3000%</td></tr>
<tr><td>신탁업자</td><td>0.0400%</td><td>0.0400%</td></tr>
<tr><td>일반사무관리</td><td>0.0180%</td><td>0.0180%</td></tr>
<tr><td>보수합계</td><td>1.1526%</td><td>1.1026%</td></tr>
<tr><td>기타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
<tr><td>총보수및비용</td><td>1.1526%</td><td>1.1026%</td></tr>
<tr><td>증권거래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
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
<tr><td>종류 C-PE</td><td>118</td><td>372</td><td>653</td><td>1,486</td></tr>
<tr><td>종류 C-P2E</td><td>113</td><td>356</td><td>624</td><td>1,421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
<td>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br>라. 운용자산규모<br>(생략)</td>
<td>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br>라. 운용자산규모<br>(업데이트)</td>
</tr>
</table>

# 변 경 대 비 표

**1. 펀드명 :** 하나UBS꿈나무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**2. 주요 변경내용**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**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** 2018년 05월 17일

**4. 대비표**

**[ 간이투자설명서 ]**

| 구 분 | 변 경 전 | 변 경 후 |
|---|---|---|
| **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** | **보수**<br>(생략) | **보수**<br>(업데이트) |
| **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** | **[1] 투자전략**<br>**3. 운용전문인력**<br>(생략)<br><br>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<br>(생략) | **[1] 투자전략**<br>**3. 운용전문인력**<br>(업데이트)<br><br>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<br>(업데이트) |
| **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** | 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<br>**2. 위험등급**<br>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1.30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| 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<br>**2. 위험등급**<br>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2.24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|

**[ 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 ]**

| 구 분 | 변 경 전 | 변 경 후 |
|---|---|---|
| **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** | 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<br>(추가) | 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<br>2018년 05월 17일<br>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<br>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<br>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

| | | |
|---|---|---|
| **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** | 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<br>(생략) | 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<br>(업데이트) |
| **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** | 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<br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br>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1.30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br>- (생략)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. | 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<br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br>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2.24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br>- (생략, 현행과 동일) <삭제> |
| **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** | 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<br>(생략) | 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<br>(업데이트) |
| **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** | (생략) | (업데이트) |
| **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** | 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<br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<br>(생략)<br>라. 운용자산규모<br>(생략) | 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<br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<br>(업데이트)<br>라. 운용자산규모<br>(업데이트) |
| **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** | **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<br>나. 수시공시<br>(2) 수시공시<br>(추가) | **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<br>나. 수시공시<br>(2) 수시공시<br>10)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|

| | | |
|---|---|---|
| | |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<br>-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<br>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br>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<br>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|